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9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정을호 · 조정식 · 문정복
이정문 · 차지호 · 윤종균
김문수 · 전현희 · 한민수
박지원 · 위성곤 · 이재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

단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人以下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u>단서 신설</u> >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 ----- ----- -----.
 2. · 3. (생략)	1. ----- ----- ----- ----- ----- ----- . 다만,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장애영아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 ③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